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22 발의연월일: 2025. 5. 8.

발 의 자:배준영·강선영·김교흥

정일영 · 윤상현 · 허종식

박충권 • 박준태 • 조지연

유용원 • 이인선 • 모경종

김 건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「법원조직법」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 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 에 전속하도록 하고,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

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7호),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5호)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4조제1항 중 "고등법원"을 "해사법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해사법원이 아닌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(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	제74조(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
제한)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	제한) ①
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	
재지를 관할하는 <u>고등법원</u> 에	<u>해사법원</u>
전속(專屬)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1항에 따른 해사법원의
	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
	고할 수 있다.